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25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9. 원고에게 한 취득세 53,889,760원, 농어촌특별세 5,388,970원, 가산세 9,650,080원의 부과처분 및 취득세 102,040,160원, 농어촌특별세 10,204,010원, 가산세 18,272,4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6. ○○시 B 임야 1,785㎡ 및 ○○시 C 임야 1,982㎡ 중 각 1/6 지분을 임의경매로 매수하고, 2011. 2. 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시 B 임야 1,785㎡는 2019. 10. 24. ○○시 D 임야 1,832㎡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시 D 임야 217㎡와 E 임야 1,083㎡, F 임야 532㎡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시 D 임야 217㎡는 2021. 4. 20.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분할 후 ○○시 F 임야 532㎡는 2020. 11. 18. ○○시 F 임야 379㎡ 및 ○○시 G 임야 153㎡로 분할되었으며, ○○시 G 임야 153㎡는 2021. 4. 20.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시 C 임야 1,982㎡는 2019. 10. 24. ○○시 H 임야 2,080㎡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시 H 임야 1,402㎡와 I 임야 678㎡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후 ○○시 H 임야 1,402㎡는 2021. 4. 20.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분할 및 지목변경 후 ○○시 D 대 217㎡, ○○시 H 대 1,402㎡, ○○시 G 대 153㎡는 2021. 4. 20. ○○시 D 대 1,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합병되었다.

마. 원고는 2021. 4. 1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910.3㎡인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1.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21. 4. 29.경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 합계 21,286,440원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2

합계 28,061,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22.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소 신고된 지방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2.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원시취득에 대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53,889,760원, 농어촌특별세 5,388,970원, 가산세 9,650,080원(취득세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5,388,97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3,880,06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381,050원) 합계 68,928,8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102,040,160원, 농어촌특별세 10,204,010원, 가산세 18,272,420원(취득세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204,01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7,346,89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721,520원) 합계 130,516,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2

1)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과 세율을 기재하지 않은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신고서의 보완을 명하지 않은 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이는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한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출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

원고는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의도나 고의가 없었고, 원고가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적 견해표명에 위반되는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2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 및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전에 피고가 일반세율이 적용된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으로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각 취득세 납부확인서(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는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한 납세고지서가 아니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영수증일 뿐이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취득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세 등 과소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2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의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 사유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가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거나 납세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2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2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2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2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2

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 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